

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환경부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월 4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 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정부가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등이며,

이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기존의 약 2,600억원(‘03년)에서 1조원 이상으로 2008년부터는 1조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공공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CI선포식 개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는 지난 7월 1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국내 폐기물 자원화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한국자원재생공사”的 사명(社名)이 자원순환형 사회를 상징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사명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공사의 이미지를 통합(CI)하고자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본사에서 광경부장관과 환경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CI선포식’과 제2의 도약의 전기

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 기능 혁신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였다.

금번 CI선포식에서 발표되는 공사의 혁신비전은 새로운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설립목적과 사명에 맞추어 폐기물의 근원적 저감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체계구축, 국가 환경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산업육성, 시장기능에 의한 친환경생산·소비체계 정착을 위한 친환경경영지원이며, 추진되는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폐기물의 사전발생 억제에 중점을 둔 통합제품정책인 환경정보장제 및 포장폐기물의 사전 관리기능 강화,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및 폐기물 재활용전문 교육기관 역할 수행, 국제무역에서의 국가간 협약 및 규제시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영영시스템(EMS) 인증지원과 국제무역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 지원 기반확충 등이 있다.

방송드라마를 통해 환경홍보 강화

환경부는 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정책현안 홍보를 위해 국민들이 매일 보는 방송 드라마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드라마의 대본을 쓰는 방송작가들과의 간담회를 10월 6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박선숙 환경부 차관 및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작가 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홍보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그동안 환경부에서 드라마속에서의 환경소재를 찾기 위해 부내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소재를 참석한 작가들에게 제공하였다. 주요 응모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응모사례

- 1회용품 줄이기 : 출연자가 장바구니를 소지하고 쇼핑을 하거나, 계산장면에 장바구니 소지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는 것 등 4건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을 과다하게 차린 주부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음식물을 남기어 꾸지람 받는 장면 등 6건
- 쓰레기 분리배출 :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온 주부를 보고 아파트경비원이 분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장면 연출 등 4건